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태바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5
----------	-----

2019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결과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교통방송 대표 이강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바,
- 서울특별시의 소속 사업소로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 재단의 사업으로 교통·생활정보 제공,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 해외방송과의 교류,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3조)
- 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임직원, 이사회 운영,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시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임원은 대표이사과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하고,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함(안 제6조)
- 재단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함(안 제9조)
- 시청자보호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시장은 재단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재단은 시와 산하기관에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시장과 재단은 2년마다 재단이 수행하는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안 제13조)

-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안 제14조)
- 조례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시행 당시 교통방송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설립된 날 시에서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3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방송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봄(안 부칙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협의완료
-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2. 14. ~ 3. 6.) 결과: 별도 첨부
 - (2)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조례안 개요

동 조례안은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방송을 재단형태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것임.

나. 재단설립의 타당성 검토

(1) 현 교통방송 개요

- 1990년 6월11일 개국한 교통방송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전문방송으로서 서울시정과 생활정보, 교통정보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되었으며,

'18. 1월 서울·수도권 지상파 라디오 채널 조사에서 FM 점유 청취율 14.8%(4위)로 '16. 7월 3.3%(10위)대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고, 그 중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1.6%(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음.

근래에 교통방송은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를 섭외하거나 시사 프로그램 또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을 늘리는 등 변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도권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산하'의 '교통전문방송'이라는 시선이 존재함.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교통방송이 2019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360억원)은 교통방송 전체 세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73억원) 비중은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16.9%로 서울시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방송 금지

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표출된 바,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 재단의 필요성 여부

- 교통방송에서는 법인화의 필요성의 논리로,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공간 제약 없이 유통되면서 선택적 미디어 이용과 소비가 가능해지는 등 경쟁적 미디어 환경이 심화되는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 혁신 뿐 아니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 권익을 대변하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변모하고자 법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나,

유튜브를 필두로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 경쟁을 넘어 방송의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교통방송은 라디오와 TV제작에 고립되어, 소셜 미디어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을 뉴딜일자리로 채용된 불안정 고용 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과연 재단 설립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3) 행정안전부 심의 결과

(가) 재단의 공공성 ·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1차 협의결과('17.7.24.) '독립성의 보장과 공영방

송으로 전환이라는 설립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17.12.26.) 심사에서도 2020년말까지 허가하면서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립 법인화 계획을 마련하여 '18.12.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었음.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2015년도 운영실적 평가보고서'((주)한국경제경영연구원, 2016)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시청자위원회, 시민편성자문위원회, 음브즈만 프로그램, 편성위원회, 합평회 등 다양한 시민, 직원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방송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방송이 “관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 혹은 시장에 종속된 구조로 변질될 우려”와 “서울시와 시장의 홍보에 상당량을 할애하며 다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음((가칭)교통방송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후속연구, 2018.2. p.4).
- 또한 교통방송에서는 법인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i) 정치적 압력과 시장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하며, tbs 최고의결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구축하고 (ii) 근로자 이사제 도입, (iii)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 규약 및 편성위원회 설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나

서울시의 출연금을 보조 받는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시는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제26조제1항), 위탁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제25조제1항), 기구 및 정원과 임직원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등(제25조제2항)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지도·감독 및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나) 재단설립에 따른 재원확보

- 행정안전부는 교통방송이 재단설립을 통해 광고수익 확대, 콘텐츠 이용료 등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지자체 출연금이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어 FM 및 tbsTV 방송광고료’와 ‘교통 FM 협찬수입금’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tbs FM이 상업광고 허가를 얻게 되면 광고수익이

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① 시장은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2.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 판매
3. 방송프로그램의 수탁 제작
4. 방송시설의 임대 등

② 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3. 방송프로그램의 상호 교환
4. 방송기술의 공동 개발 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상업광고 허가가 용이해진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임.²⁾

또한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한 방송통신 발전기금³⁾의 지원을 장기적 추진 예정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방송 통신위원회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 재단설립의 경제적 효과(B/C분석)

○ 교통방송은 비용편익비율(B/C)이 0.52로 1보다 적으나, 경제적 효익 이외의 시민의 공익 등 공공성을 감안하면 재단 설립의 타

-
- 2) '2018년 대한민국 광고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디지털 광고비는 무려 26.4% 증가하고 지상파TV와 라디오의 광고비는 2년째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업광고 허가는 불투명한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방송도 상업광고 허가가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3)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용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당성은 입증되는 것으로 분석⁴⁾((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후속연구, 2018.02. p.165)하였으며,

- 이에 행정안전부 2차 심의결과 검토 의견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율 산출시 (i) 설립 기준상의 최근 3개년간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이 미적용되었으며, (ii) 비용/편익비가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고, (iii)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비용-효과분석(E/C)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교통방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교통방송은 편익분석에서 2020년 재허가 이후, FM상업광고 허용시 2021년 영업수익(자체수입)이 전년대비 2배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실제로 FM 상업광고 허용이 불확실하고 교통방송을 통해 광고를 희망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배로 수입을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임.

<표 1> 비용편익(B/C)분석 중 편익(B)분석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편익합계	19,003	19,553	26,698	27,003	27,263	27,668	27,978	28,393	28,843	29,308
영업수익 (자체수입)	7,025	7,575	14,720	15,025	15,285	15,690	16,000	16,415	16,865	17,330
기획비용 (서울시정 방송)	11,978	11,978	11,978	11,978	11,978	11,978	11,978	11,978	11,978	11,978
할인계수	1.0000	0.9479	0.8985	0.8516	0.8072	0.7651	0.7252	0.6874	0.6516	0.6176
편익의 현재가치	19,003	18,534	23,988	22,996	22,007	21,169	20,290	19,517	18,794	18,101

4)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2018.12.)”에서는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경제성 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20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 37조에 따라 정책적 측면의 가중치가 더 높다는 점에서 종합평가분석이 0.5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고 재정투입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둘째, 서울시정방송의 기회비용으로 FM, eFM, TV에 투입되는 시간을 광고비로 환산하여 매년 119억7천8백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기회비용 계산을 정확히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으나 각 유형별 광고비를 실제로 추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표 2〉 서울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회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방 식	시간(분)/년	광고환산액
라디오(FM)	캠페인, SPOT 등	2,676	5,298
라디오(eFM)		2,676	145
TV		4,940	6,535
합 계		10,292	11,978

.방송출연, 멘트 등 환산이 어려운 시간은 제외
 .eFM 및 TV는 자체 광고 단가 적용
 .FM은 SBS파워FM 광고단가 최저기준(B) 적용
 .tbs 교통방송 내부자료 재구성

셋째, 비용측면에서 방송제작비와 인건비에 관해서는 실질인상율 1~2%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 방송시설비의 경우 내구연한에 따라 투자시기를 결정한다는 점과 투자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변동없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설득력이 없고, 면밀한 분석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됨.

<표 3> 비용편익(B/C)분석 중 비용(C)분석 총괄표

(단위: 백만원)비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용합계	38,110	38,614	39,097	39,589	40,087	40,595	41,109	41,633	42,166	42,708
투자 활동	방송 시설투자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영업 활동	방송 제작비	15,154	15,305	15,458	15,613	15,769	15,927	16,086	16,247	16,409
	인건비	14,619	14,912	15,211	15,516	15,827	16,144	16,467	16,797	17,135
	광고 및 기획홍보비	1,719	1,754	1,772	1,791	1,809	1,828	1,847	1,866	1,885
	기타경비	1,229	1,254	1,267	1,280	1,293	1,307	1,320	1,334	1,348
할인계수	1.0000	0.9479	0.8985	0.8516	0.8072	0.7651	0.7252	0.6874	0.6516	0.6176
비용의 현재가치	38,110	36,601	35,127	33,715	32,359	31,061	29,814	28,620	27,475	26,378

넷째, 재단법인화 이후 적정인력을 448명(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실질인상률 2%로 가정하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4시간 운영되는 방송업계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민간과 공무원간의 초과근로수당⁵⁾차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주52시간 초과 직종 인력 보장에 따른 비용, 연금 변화에 따른 일부보전 비용, 복리후생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직급, 직위, 경력에 따라 유동적인 인건비⁶⁾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미반영되는 등 결국

5) 공무원과 재단의 시간외 수당 비교표

초과근로수당 단가			
공무원	A재단	B재단	C재단
8,528원 ~ 13,641원	10,161원 ~ 22,742원	15,210원 ~ 36,750원	18,407원 ~ 34,605원

6) 「(가칭)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에 따른 조직·인사분야 설계용역(2019.3월~6월(4개월))

법인화되더라도 시 출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단화로 인한 예산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방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년 재허가를 얻고, 2021년부터 FM 상업광고가 허용되어 광고 매출액이 2배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방송제작비, 인건비, 광고 및 기획홍보비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1% 전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설득력있는 분석이라 하기 어려움.

교통방송은 서울시 50+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의 사례를 통해 B/C 비율이 1이하인 경우에도 재단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2차 재검토 의견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교통방송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B/C분석은 FM 상업광고가 허가가 불확실하고 서울시정방송을 통한 광고비 추계가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편익은 과도하게, 비용은 과소하게 추정된 결과로 신뢰도가 높다 하기 어려움.

- 교통방송은 서울시 예산 총액이 32조원으로 재단법인 신설로 향후 연간 전입금인 약 311억원은 전체 예산의 0.1% 수준으로 서울시 재정과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전환 후에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단설립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독립성 확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행정안전부는 교통방송의 재단화 전후 인력규모 변화에 대해 인원 수는 동일하나 정규직 329명(28명→357명)의 대폭 증가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고, 시 출연금은 재단설립 전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17년 353억원 중 市 전입금 310억원 → 향후 10년간 출연금 310억원 ~ 312억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음.

<표 4> 재단전후 인력규모 변화

서울시 사업소 (448명)			⇒	재단법인 (448명)		
정규직 (28명)	일반직	16명		정규직 (357명)	방송제작	200명
	공무직	12명	제작지원/작가		117명	
비정규직 (420명)	임기제	148명	행정/지원		28명	
	프리랜서	185명	청경/운전		12명	
	파견용역	87명	비정규직 (91명)		계약직(작가)	78명
				프리랜서	13명	

- 「2019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큰 방향 아래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

다만, 가점 대상자가 ‘교통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18.1.24)’ 기준으로 “교통방송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 바, 직접고용 계약 총 146명 중 77명이 중도 퇴사하여 2018.1.25.이후 필요에 의해 채용된 59명의 고용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하나 뚜렷한 계획이 없음.

<표 5> 2018.1.24.이후 채용현황

구분	‘18.1.24.이전 현황	‘18.1.24.현황	‘18.1.25.이후 계약
직접고용	-	146명	59명
파견용역	89명	-	-
프리랜서	182명	48명	28명
퇴사	-	77명	20명

(4) 그 외 검토사항

(가) 낮은 시청률 및 인지도

-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케이블TV, IPTV 채널은 접근이 어려운 뒷번호를 부여받고 있으며, 기본요금제가 아닌 고급형 패키지에 편성되어 있어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재단 설립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임.

<표 6> IPTV 교통방송 채널번호 현황

채널명			
채널번호	214번	167번	245번

또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2015년도 운영실적 평가보고서 ((주)한국경제경영연구원, 2016)’에서 “교통방송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나 재단 설립으로 인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은 찾아 볼 수 없음.

(나) 재단을 관할하는 서울시 소관부서

- 교통방송이 재단화된다면, 그 지도·감독부서를 교통위원회 소관인 도시교통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으로 변경하는 관련 조례⁷⁾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시행중인 문화본부(문화예술과)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정공감대 형성 및 참여시정 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이 거론되고 있으나 교통방송의 재단화 이후의 정체성 및 향후 운영방안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다) 서울시의 재단 남설 및 방만 운영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출자출연조례”라 한다) 제15조제5항8)에 따라 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제21조9)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5개 재단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박기재의원 요구자료, 415번)를 확인한 바, 평가 결과가 매년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장이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정명령 및 이행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의 재단 남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실제로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출자출연조례」에 따른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내용 변경, 방만한 경영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방송의 재단설립이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8)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표 7> 최근 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개 재단의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2016		2017		2018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률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률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률
A	다	130%	다	130%	다	70%
B	나	220%	가	275%	다	100%
C	다	70%	라	0%	라	0%
D	가	250%	나	220%	다	70%
E	나	160%	가	250%	다	100%

<표 8> 최근 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개 재단의 기관장 평가 결과

기관명	2016			2017			2018		
	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연봉 인상률	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연봉 인상률	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연봉 인상률
A	A	142%	3%	B	130%	0%	B	82%	1%
B	A	220%	3%	S	250%	5%	A	124%	2%
C	B	94%	0%	C	0%	0%	C	0%	0%
D	A	220%	3%	A	190%	3%	B	82%	1%
E	B	-	-	A	220%	3%	B	70%	1%

(5) 타당성 관련 종합의견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재단설립을 한다는 것이 교통방송의 설명이지만, 교통방송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은 물론 책임운영기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고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공식적·비공식적 제약이 있었다고는 하나 서울시와 시장의 간섭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언론의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며, 오히려 관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하려면 완전 민영화, 예산확보, 자율운영만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행정안전부 ‘교통방송재단 설립 협의 심의결과(2차, 2018.12.)’에서 “교통방송의 출연재단을 협의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비가 0.52로 1보다 작아 경제성은 없으나 정책적 측면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재단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책임운영기관에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변경에 따른 차별성이 뚜렷해야 함에도, 서울시의 전입금에서 서울시 출연금으로 결국 서울시의 재원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인 전환은 독립성의 강화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고용이 불안한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84.1%, 176명 중 148명)이 유독 높은 기형적인 구조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임. 즉, 고용문제 해결에 따라 안정적 근무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전보다 용이해지고 전문 인력의 유출도 방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의 구조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4개 조에 걸쳐 목적, 설립, 재단의 사업, 재단의 운영재원 등,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직원,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예산편성 및 결산, 사업의 독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9>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이사회
제2조	설립	제10조	시청자위원회
제3조	재단의 사업	제11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4조	재단의 운영재원 등	제12조	예산편성 및 결산
제5조	정관	제13조	사업의 독립성
제6조	임원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제7조	임원의 직무	부칙	
제8조	직원		

(2)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규정(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제명에서 새로 설립될 재단의 명칭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라고 정하고 있음. 기존 연구용역 등에서 “(가칭)tbs교통방송재단”을 사용하다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변경함은 방송분야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는 재단의 목적을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음.
- 안 제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고 함)의 법정 성격을 규정함.
-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0)의 시행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각 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제7호를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재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문화예술”로 특정하기 보다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생략)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2.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3. ~ 7. (생략)	3. ~ 7.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 8.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3) 재단의 재정과 정관에 관한 규정(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 안 제4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목적, 명칭, 그 밖에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자출연법」 제8조¹¹⁾에서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따른 것임.

(4) 조직 및 인력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기관별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정하도록 한 「출자출연법」 제9조¹²⁾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만, 동 조례안을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담당관에 법제심사 의뢰한 결과 기존 제9조(이사회) 제1항에 명기되었던 성별 비율 준수사항을 임원조항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따라 제6조(임원) 제1항에 규정하게 된 것임.

- 우리 상임위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각 재단이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기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총 5건¹³⁾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음.

현재 「출자출연조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시장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고, 집행부·의회 간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시장 추천 3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임원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의원, 2019.3.22.발의)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 안 제8조의 직원과 안 제9조의 이사회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한 「출자출연법」 제15¹⁴⁾조에 따른 것으로 재단의 민주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는 재단이 정관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나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안 제10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다.</p>	<p>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 align="center"><신 설></p>	<p>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p>② (생략)</p>	<p>③ (제정안과 같음)</p>

(5) 사무의 위탁과 예산·결산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

- 안 제11조에서는 서울시가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후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되,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재단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6) 사업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방송법」 제4조¹⁵⁾를 근거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여 시장과 재단이 2년마다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수정함.

(7) 부칙규정

- 안 부칙 제3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는 현재 교통방송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설되는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및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14조(공무원의 파견)의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신설되는 재단법인에 파견¹⁶⁾할 수 있고 기존 교통방송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본청으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설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특례 규정은 재단 설립시부터 직원채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5)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6)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투자·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현황(붙임5 참조)을 살펴보면, 1~2년 기간동안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파견되어 조직·인사관리·재무회계 및 계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수정의견 종합

제 정 안	수정의견
<p>제3조(재단의 사업) ① (생략)</p> <p>1. (생략)</p> <p>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p> <p>3. ~ 7.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재단의 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p> <p>3. ~ 7.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생략)</p>	<p>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p> <p>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p> <p>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p> <p>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p> <p>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3조(생략)</p>	<p><삭 제></p>
<p>제14조(생략)</p>	<p>제13조(제정안 제14조와 같음)</p>

<붙임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개요>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명칭 :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재단법인)

※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설립시기 : '19.9월 출범(예정)

출연금 규모

- 총 출연금액 : 10년간 3,184억원, 연평균 약 318억원
 - 기본재산 : 60억원 ('18년 세출예산 36,938백만원 기준 약 2개월 분)
 - 운영비 : 총 3,124억원, 연평균 312억원 (사업비 및 조직 운영경비 포함)
- ※ 현재 tbs가 보유 중인 방송설비 등은 별도 현물출연

○ 연차별 출연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예산 (A+B)	4,601	432	439	445	451	457	463	469	475	482	488
서울시 출연금(A)	3,182	362	363	298	301	304	306	309	311	313	315
자체수입 (B)	1,419	70	76	147	150	153	157	160	164	169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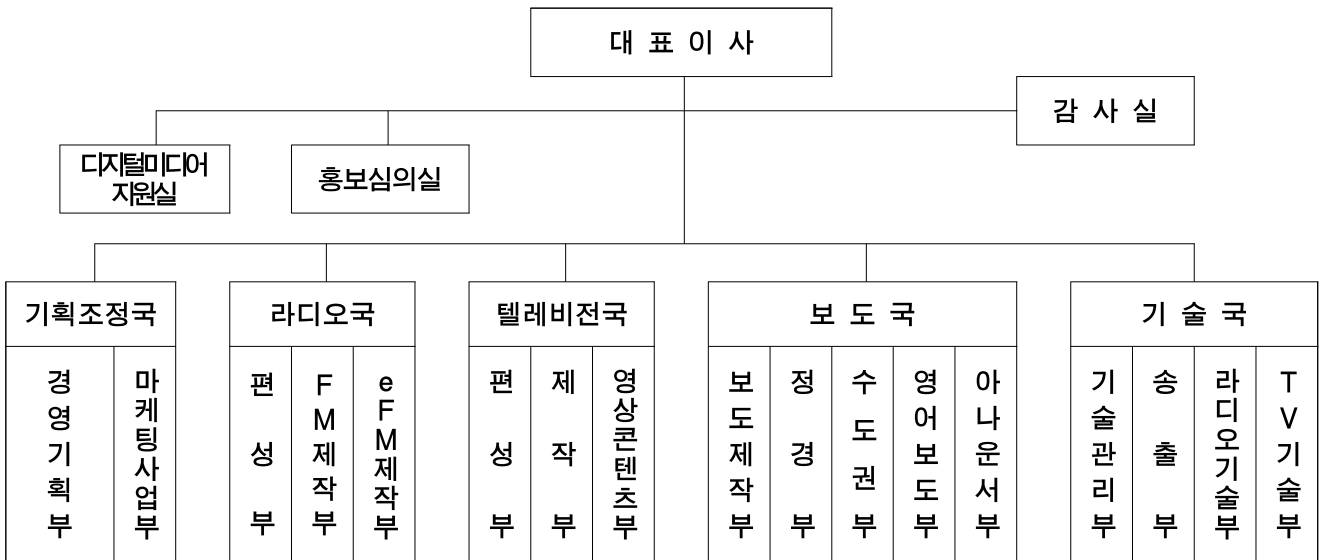
- * 방송제작비는 신설재단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18년 예산대비 '19년 10% 상승적용, 이후에는 매년 실질인상률 1%를 가정 적용
- * 인건비는 매년 실질인상률 2% 적용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3실 5국 17부

○ 인력규모 : 총 448명(정원 기준) ⇒ 현재와 동일한 수준

< 재 단 조 직 구 성(안) >



□ 주요사업

○ 공익사업 : 현재 주요 사업, 시민의 방송으로서 필수 사업

- tbs FM(95.1Mhz) :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 tbs eFM(101.3Mhz) : 외국어콘텐츠 제공 및 다문화 사회 기여
- tbs TV : 서울·수도권 지역의 생활 및 지방자치 정보 중심의 콘텐츠 제공

○ 수익사업 : 재단법인화 이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교통FM(95.1Mhz) 협찬 및 상업광고, eFM(101.3Mhz) 상업광고, tbs TV 협찬 및 상업광고
- 인터넷, 모바일, 팟캐스트, 유튜브,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 등
- 케이블 TV 및 IPTV 수신료, 콘텐츠 판매, 문자서비스 등
- 이벤트, 문화사업 등

<붙임2. 재단법인 전후 예산 및 인력 추가소요 검토>

□ 최근 4년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9,737	35,328	41,132	44,049
방송제작	14,769	14,490	16,494	11,296
방송시설	17,820	4,921	5,363	4,822
인건비	11,808	13,084	14,333	24,844
기 타	5,340	2,833	4,942	3,087

* 인건비는 '18년부터 프리랜서, 파견·용역인력의 직접고용에 따른 법정부담금(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4대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등) 편성 등으로 증가함

* 기타는 예비비, 기본경비, 홍보비, 광고유치추진 등임

□ 재단전환 후 비용분석 총괄 (참조 : 행안부 지방출연기관 설립 협의자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예산	49,315	43,917	44,498	45,090	45,692	46,304	46,925	47,557	48,201	48,855	
기본재산	6,000	-	-	-	-	-	-	-	-	-	
방송시설 투자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방송제작비	10,134	10,180	10,224	10,268	10,312	10,354	10,395	10,435	10,476	10,514	
인건비	소계	24,844	25,340	25,846	26,362	26,889	27,426	27,974	28,533	29,103	29,685
	방송제작	12,219	12,463	12,712	12,745	13,001	13,261	13,527	13,798	14,075	14,357
	광·홍보등	2,160	2,662	2,716	2,771	2,826	2,883	2,940	2,990	3,060	3,121
	정규직 전환비용	10,015	10,215	10,418	10,846	11,062	11,282	11,507	11,736	11,968	12,207
광고 및 기획홍보비	1,719	1,754	1,772	1,791	1,809	1,828	1,847	1,866	1,885	1,905	
기타경비	1,229	1,254	1,267	1,280	1,293	1,307	1,320	1,334	1,348	1,362	
누 계	-	93,232	137,730	182,820	228,512	274,816	321,741	369,298	417,499	466,354	

※ 서울시와 협의에 따른 정원, 조직·인사분야 설계용역에 따른 직위·직급, 노사간 협의에 따른 복리후생 수준에 따라 인건비 예산 규모는 변동가능성이 있음

□ 향후 예산추계

- 세출예산은 방송제작, 방송시설, 인건비, 기타로 분류
- 방송제작비는 생방송, 현장방송, 출연진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
- 방송시설비는 장비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투자시기 결정
- 인 건 비
 - 신규 기능 추가에 따른 총원
 - ▶ 감사실, 홍보 담당, 경영평가, 시민참여 담당 등 신설 조직에 대한 신규 총원 필요
 - 뉴미디어 담당자 신규 총원
 - ▶ SNS 콘텐츠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을 위해 종전 뉴딜일자리로 운영하던 뉴미디어 담당 직종을 정규 정원으로 운영
 - 종전 기능보강 및 본청 지원업무 직접수행에 따른 총원
 - ▶ tbs FM 상업광고 추진을 위한 광고 담당 총원 등 종전 기능보강
 - ▶ 부가가치세 담당, 교육훈련, 연금담당, 산업안전 담당, 전산 담당, 복리후생 등 기존 본청 지원업무 직접수행에 따른 총원
 - 주 52시간 초과 직종 인력 보강
 -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기술국 TV기술 및 eFM라디오 기술 부문 등 주 52시간 초과 직종에 대한 인력보강
 - 직원 신분변경(공무원→일반노동자)으로 인한 연금 비율변경에 따른 일부 보전 필요

※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기여금 부담률

공무원 연금	국 민 연 금	비 고
기준 월소득액 18% (본인 9%, 정부 9%)	9% (본인 4.5%, 사업장 4.5%)	단, 국민연금 기여금 월 납입 상한액은 최대 42만원

➔ 인건비는 직급, 직위, 경력 등에 따라 규모가 유동적임('19년 인건비 24,844백만원)

- 기타는 기본경비, 홍보비, 광고유치 관련 소요예산임

<붙임3. 교통방송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제약사항>

구 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실제 운영 현황
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직렬) 자율적 조정 · 성과계약상 총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정원 증감요청 · 기관장이 비정규 상근인력 정수 책정 · 정원조정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조정은 市 조직담당관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최종 결정하므로 자체조정 불가 · 임기제 채용승인은 市 인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므로 절차상 자율권에 불과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은 2~5년 이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공모) ·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 행사 · 4급이하 일반직 기관 내 전보 · 시장과 사전협의 및 전보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 기관 근무희망자 공개모집·선발 · 규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방법 결정 · 규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방법 결정 · 기관장이 4급이하 소속직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상 인사권이 기관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기관 내 전보권을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 市 일반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동일 · 성과급 등 보수 관련 사항도 市 일반소속기관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 · 자체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
예산·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범위 내에서 초과수입금 사용 · 실·국장 책임제로 사업예산 편성·집행 ·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기관장의 재정관리 자율성 미흡 · 예산의 탄력적 집행 불가능 · 市 본청 관계부서의 과도한 통제
기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상 조직, 인사, 예산 등을 사전에 통제받지 않고 사후 평가를 통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일반 소속기관과 차별화 · 평가결과는 기관장 재계약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市 본청의 조직, 인사, 예산·회계부서, 평가 부서 등에 사전 통제를 받고 있음

<붙임4. 교통방송의 주장에 따른 재단법인 전환 이후 주요 변화>

구 분	현 행(市 사업소)	재단법인 전환 이후
<p>공정성 제고 및 콘텐츠 다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공장을 비롯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지속성장 필요 · 저널리즘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 부재 · 경직적 제작문화로 인한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실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강화 ·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등 저널리즘 관련 교육 강화 · 교양, 오락 장르의 실험적 시도 장려 · eFM 프로그램 다변화 추진
<p>TV 채널 쇠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채널의 존재감과 영향력 미약 · 제한적 제작비, 인력으로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 저하 → 제작비 인력수급 어려움의 악순환 고착화 · 미약한 영향력으로 인해 IPTV 등에서 뒷자리 채널번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니아 시청자층 확보를 위한 특화된 콘텐츠 지속발굴 · 과감한 실험편성을 통한 시행착오 극복 · 영향력 있는 콘텐츠 지속 생산을 기반으로 앞자리 채널번호 획득
<p>시민 미디어 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s 시설, 공간, 아카이브 비공개 · 시민 콘텐츠 제작, 지원활동 등 미약 · 시민의제 참여 토론프로그램 전무 · 市 산하 유관기관과의 콘텐츠 자원 공유 체계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 공간, 일부장비, 아카이브 개방을 통한 시민 콘텐츠 제작활동 등 지원 · 시민제작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선별 또는 변형을 통한 프로그램 편성 · 시민의제 참여 토론프로그램 제작·편성 · 市 산하 유관기관의 문화예술 콘텐츠 등 유통 플랫폼 역할수행

<붙임5. 서울시 산하기관(투자·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현황>

연 번	기관명	파견기간			파견업무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기 간	
합 계					
1	(재)서울디자인재단	2018.07.23	2019.07.22	1년	조직·인사관리, 재무회계 및 계약 등
2	서울디지털재단	2019.01.01	2019.12.31	1년	재단 운영 조직관리
3	서울디지털재단	2019.01.11	2020.01.10	1년	회계, 사업비 지출 등 행정 지원
4	120다산콜재단	2018.01.08	2019.01.07	1년	120다산콜재단 정보시스템업무 총괄, 서버 및 DB, S/W 구축 및 운영관리
5	120다산콜재단	2018.05.01	2019.04.30	1년	120다산콜재단 홈페이지 및 S/W, 상담관리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관리
6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2017.07.17	2019.07.16	1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재정, 인적 및 물리적 지원 등
7	(재)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2018.04.09	2020.04.08	2년	직원채용, 복무/노무관리 등
8	(재)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2018.04.09	2020.04.08	2년	예산편성 운영, 자금운용 등
9	(재)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2018.08.02	2019.08.01	1년	예산편성 운영, 자금운용 등 지원
10	서울관광재단	2018.07.20	2020.07.19	2년	재단의 기관 목표 설정 및 전략사업개발 관련 업무 등
11	서울관광재단	2018.08.02	2019.08.01	1년	예산편성, 운영, 계약 등
12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2019.03.19	2020.03.18	1년	시-재단-이사회간 업무 협력 및 조정 등
13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2019.03.19	2020.03.18	1년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조직관리,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
14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2019.03.19	2020.03.18	1년	인사 및 중장기인력관리, 채용, 예산 등
15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2019.03.19	2020.03.18	1년	회계, 내부규정 제.개정,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문 : 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답 :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인사·조직·예산상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가 있고, 대내외적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면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음.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의 기능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문 : 재단전환 시, 市 출연금 지원과 tbs 상업광고 허용에 따른 광고수입 증대로 자칫 방만한 경영이 우려됨.

답 : 재단화 후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해 시와 시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며, 경영상 중요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상업광고가 허용되더라도 수입이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제작비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 보전과 방송설비 투자 등 필요시에는 출연금 지원 요청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이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였으나 주관부서, 기획조정실 등과 재단의 운영에 대해 협의할 때 과연 독립성이 온전히 유지될지 의문이며,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 : 교통방송은 공영방송 특성상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 타 재단에 비해 독립성이 더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례에 규정하여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공감하나 방송통신위원회, 언론계 등 의견을 좀 더 취합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문 :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업광고 허용이 안 될 경우 대책은?

답 : 교통방송은 市 사업소로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적용받아 왔음. 상업광고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기존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들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의 결정보다 타 방송사의 견제가 상업광고 허용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상업광고 허용이 안 될 경우 ① 유튜브,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수익 ②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연계한 뉴스의 포털 뉴스서비스 콘텐츠 제휴수익 ③ 지역 지상파 라디오, 케이블 지역채널, 중소 PP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공수익 ④ 유료방송(케이블, 위성방송, IPTV)으로부터의 콘텐츠 제공수익 ⑤ 공익적 목적의 기타사업을 통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 : 조례상 서울시와 재단과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어디까지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봐야하는가?

답 : 재단의 독립성은 관련 조례, 법령상 근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 의무로 인하여 제약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을 비롯하여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

을 받지 않고 헌법과 방송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해주시길 바람.

문 : tbs가 IPTV 기본채널에 포함되어야 조례안 상에 “동등한 정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tbs의 입장은?

답 :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대외 협력 계획 수행과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공익 채널 지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85
----------	-----------

제안연월일 : 2019년 6월 1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교통방송은 재단설립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이 다양하게 이루고자하므로 안 제3조 사업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관련 방송”을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수정하며,
- 안 제10조의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며, 안 부칙 제3조의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및 동 조례안 제14조(공무원의 파견)의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신설되는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으며, 신설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특례 규정은 「출자출연법」 제12조에 위반되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업에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관련 방송”을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위원과 권한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제1항, 제2항).
- 고용승계 대상에서 일반공무원은 삭제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에서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다”를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로 하며,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부칙 안 제3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과”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생략) 1. (생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3. ~ 7. (생략) ② (생략)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3. ~ 7.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 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사업의 독립성) 시장과 재단은 2년마다 재단이 수행하는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삭 제>
제14조(생략)	제13조(제정안 14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3.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
화를 위한 방송사업
4.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6.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시청자 보호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
10. 정관의 변경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임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③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와 그 산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교통방송에 소
속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제2호에 따른 일반임
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설립된 날 시에서 퇴직하고 재단
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교
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방송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